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찬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8
----------	----

발의연월일: 2019년 1월 14일

발 의 자: 박찬원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호적법 폐지('08.1.1.) 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운영되고 있음에도 호적법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등을 수정하여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출서류 항목 신설(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 현행은 사망의 경우, 증명서상 사망사실 정리가 안 되었을 때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사망사실이 정리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호적법상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항제1호나목)

- “호적상”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다. 약칭,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3조 등)

라. 보상심의회 간사의 담당직위 현행화(안 제6조제1항)

- “정책기획담당주사” → “기획담당”

마.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라. 집행기관 의견수렴 : 2019. 1. 3 ~ 1. 15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평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이하”조례 라 한다)”를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청구할때”를 “청구할 때”로, “군의 회의장”을 “평창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나목 내지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중전의 가목) 중 “호적상 사망사실 정리가 안된 경우”를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사망사실 정리가 안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다목(중전의 나목) 중 “자료1부”를 “자료 1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상해”를 “장애·상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접수할때”를 “접수한 때”로, “3일이내에 지방자치법 제34조”를 “3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34조”로, “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군수는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제35조 제3항”을 “제35조제3항”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35조제3항제1호의 지방의회 의원은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영 제35조제3항제2호의 소속 공무원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3. 영 제35조제3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군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영 제35조 제3항제4호”를 “영 제35조제3항제4호”로, “도내”를 “도 내”로, “교수등”을 “교수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상심의회의원간사는 기획감사실정책기획담당주사”를 “보상심의회의원 간사는 군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으”로 한다.

제7조 중 “평창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접 수	제 호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장애 <input type="checkbox"/> 상해 보 상 금 청 구 서			처리기간
	년 월 일				15일
대 상 의 원	성 명			생년월일	
	상병(사망) 일 시			상병(사망) 장 소	
	상병(사망) 원 인 및 발 생 경 위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송 금 처	은행	지점	계좌번호	
<p>「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p>					
<p>첨부서류 1. 3.</p> <p style="text-align: center;">2. 4.</p>					
경 유	제 호	<p>「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서를 이송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년 월 일				
<p style="font-size: 1.2em;">평 창 군 의 회 의 장</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직 인 </div>					
<p>평 창 군 수 귀하</p>					

(뒷면)

□ 사 망 □ 상 병 경 위

평 창 군 의 회 의 장 의 견

※ 평창군의회에서 사망·상병경위와 의장의 종합의견을 작성하여 첨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평창군의</u> <u>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u> <u>조례(이하"조례 라 한다)</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p> <p>제2조(보상금의 청구) ①<u>조례</u> 제5 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권 자가 보상금을 <u>청구할때</u>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 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u>군의</u> <u>회의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사망의 경우 <u><신 설></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사망진단서 1부(호적상</u> <u>사망사실 정리가 안된 경</u> <u>우)</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u>자료1부(사실혼</u></p>	<p>제1조(목적) ----- 「<u>평창군</u> <u>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u> <u>에 관한 조례</u>」----- ----- -----.</p> <p>제2조(보상금의 청구) ① 「<u>평창</u> <u>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u> <u>급에 관한 조례</u>」 (이하 “<u>조례</u>” <u>라 한다</u>) -- <u>청구할 때</u>----- ----- <u>평창</u> <u>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u> <u>이라 한다)</u>--.</p> <p>1.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u> <u>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u> <u>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u> <u>부</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가족관</u> <u>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u> <u>상 사망사실 정리가 안 된</u> <u>경우</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 ----- <u>자료 1부</u>-----</p>

관계의 경우)

다. (생략)

2. 장애·상해의 경우

가. ~ 다. (생략)

② (생략)

③ 군의회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군의회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군수는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이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 ① 지방자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 (현행 다목과 같음)

2. 장애·상해--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접수한 때-----

- 3일 이내에 「지방자치법」
제34조-----

----- 평창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 군수는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 ①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3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 영 제35조 제3항제1호의 지방
의회의원은 군의회의장이 추
천하는자로 한다.

2. 영 제35조 제3항제2호의 소속
공무원은 군의 기획감사실장
으로 한다.

3. 영 제35조 제3항제3호의 의무
직공무원은 군의 보건의료원
장으로 한다.

4. 영 제35조 제3항제4호의 사회
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도내 대학의 법학
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의
교수등 전문가로 위촉한다.

② (생략)

제6조(간사) ① 조례 제10조의 규
정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기획감사실 정책기획담당주사로
한다.

② (생략)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보상심 의
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 회의
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 의
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평창군지

1. 영 제35조 제3항제1호의 지방
의회 의원은 군의회의장이 추
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영 제35조 제3항제2호의 소속
공무원은 평창군(이하 “군”이
라 한다)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3. 영 제35조 제3항제3호의 의무
직공무원은 군 보건의료원장
으로 한다.

4. 영 제35조 제3항제4호-----

----- 도내 -----

교수 등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① -----
-----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군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

----- 「평창군

방공무원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평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8435호, 2007.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호적법은 폐지한다. 다만, 2008년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회복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의 신고 및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통보는 종전의 「호적법」 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 및 제112조의2를 적용하되, 위 「호적법」 조항들을 적용할 때 「호적법」 제15조는 이 법 제9조로,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본다.

제3조~제7조 (생략)

제8조(다른법률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2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14조제2항 중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를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한다.

제836조제1항·제859조제1항 및 제878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⑮ (생략)